

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을 산정

산정 대상

대상 : 19개 업종 종합·전문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5개 업종* 종합건설업체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정
- ▶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3개 협회에 등록된 14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가스, 시설물유지관리 등 14개 업종

산정 절차 및 방법

- ▶ (기초자료 파악) 종합·전문건설업체 명단, 산업재해현황, 실적액 등 관련 협회를 통한 기초자료 파악
- ▶ (최초 산정) 기초자료 파악 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산정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00
*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 합계(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 포함)
- ▶ (이의 신청) 3차에 걸쳐 이의신청 접수, 검토 후 결과 반영
- 산업재해발생률 결과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건설안전평가지표 홈페이지(const.kosha.or.kr)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사고사망만인율 확정(매년 7월초) 이후 이의신청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불가능하므로 지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 (심사단 회의) 이의신청 중 불인정항목 등 판단이 곤란한 경우 심사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사위원 구성 및 회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 (최종 통보) 건설업체 및 고용노동부 산정결과 통보
- ▶ (공표) 사고사망만인율 공표 및 결과 활용
- (고용부) 사고사망만인율 불량업체 감독·점검 및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선정
- (조달청) 공사 입·낙찰제도 가감점 부여
- (대한건설협회) 공사 실적액 감액, 상호협력평가 반영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대상 및 목적

대상 : 자율 신청한 발주기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목적 : 안전보건의 기업경영에 접목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하여 자율신청을 받아 평가, 안전보건 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 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함

인증절차 및 효과

인증 절차



- ▶ (실태심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수준 및 시스템구축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전 임의현장에 대한 실태심사
- ▶ (컨설팅) 실태심사 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실시(필요 시)
- ▶ (인증심사) 컨설팅 실시 후 사업장 스스로 인증기준에 도달 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 만족 시 인증서 수여
- ▶ (사후심사) 인증서 수여 후 매년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평가
- ▶ (연장심사) 인증서 수여 후 3년마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평가

인증 효과

- ▶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여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추진
- ▶ 재해와 작업손실 감소로 재해보상액 감소,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에 기여

업무수행 관할 일선기관

- ▶ 서울광역본부 건설시스템팀(02-6711-2855) 및 6개 광역본부(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건설안전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협력하여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 90점 이상 등을 충족하는 건설업체에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안전보건경영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프로그램**

대상 보증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설업체
①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 90점 이상이고,
②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업체

지원 내용

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등
*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지원 절차



문의 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T.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ESG 평가등급 우수 건설업체
보증료 우대프로그램**

대상 보증

건설자금보증
*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 은행계정)이란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증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기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기업

지원 내용

보증료율 0.1%p 감면
* 기준 보증료율 : 분양주택 0.5%(0.2% ~ 0.95%), 임대주택 0.4%(0.2% ~ 0.85%)

보증요건	기금계정	은행계정
사업유형	분양, 임대	
보증신청시기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완료 후	
보증대상자금	주택건축비	주택건축비, 사업대지비, 기타사업비
대출채권	주택도시기금	은행자금
사업대지 요건	대지소유권 이전 완료 (대지에 대한 제한물권이 없어야 함)	사업대지 전부에 대한 계약 체결 (매매대금 10% 이상 납부)
시행사	주택건설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사업주 * 다만, 대지비를 포함하는 은행계정의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신용등급 BB+ 이상 ② 시공능력순위 200위 이내 ③ 최근 3년내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실적(자재사업 및 도급공사를 포함한다) 보유 ④ 관계기업 또는 시공사가 ①~③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연대보증 또는 사업약정을 체결	
시공사 책임	연대보증	

* 보증요건은 사업대지, 시행(공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요건이 추가될 수 있음.

지원 절차



문의 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T.051-663-8783)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

대상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매년 평가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인 업체

* 고시 제2023-45호(2023.8.31.) 개정으로 '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평가대상 확대됨

절차



항목 및 배점 (고시 제2020-4호 기준)

평가유형 구분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 보유 “가”형, 미보유 시 “나형”

평가항목	증빙서류	평가점수 (가형)	평가점수 (나형)
		100점(105점)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40점 (25점)	50점 (25점)
- 사업주 행사 참여	- 대표이사 참여 확인이 가능한 행사 증빙서류	(15점)	(25점)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또는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전산 자료 등 (고용노동부 선임보고서)	40점	-
3. 안전보건 조직	- 본사 전체 조직도 -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업무분장표 - 본사 안전보건 업무 수행사실이 확인되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20점	50점
4. 가점 항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5점	5점

입·낙찰제도 적용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노력을 평가하여 공공 발주공사 입·낙찰제도(종합심사낙찰제, PQ심사, 적격심사) 가점 부여

종합심사낙찰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9.26>	입찰참가자적사전심사(PQ) <조달청 지침, 22.1.1 시행>
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점수 합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평가 가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 100점	·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평점 80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90점	·평점 90점 이상 95점미만인 자 +0.8
·평점 70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80점	·평점 85점 이상 90점미만인 자 +0.6
·평점 60점 이상 70점미만인 자 70점	·평점 80점 이상 85점미만인 자 +0.4
·평점 50점 이상 60점미만인 자 60점	·평점 75점 이상 80점미만인 자 +0.2
·평점 50점 미만인 자 50점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